

의안번호	2200479
의 퇴 인	송옥주 의원
회 답 일	2024. 07. 25.
추계번호	24A084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 <u>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제2호의2 신설)</u>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제5호의2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항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공급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각 시·도에서는 현행법¹⁾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비용 평균 단가는 약 1억 원임²⁾

※ [참고자료1]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비용 현황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사업으로는 ‘미래 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사업³⁾이 있으며, 내역사업인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이행 지원’을 2023년까지 운영하였음

[표 1]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5139-308)’ 사업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세부사업)	16,186	14,764	10,000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이행지원(내역사업)	2,298	192	-

- 주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부사업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3.6. 제정됨에 따른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 발굴·지원중
2.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이행지원 내역사업은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24년부터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활성화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이행지원’ 내역사업은 폐지됨

□ 안 제7조제2항제2호의2의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취약지역을 유형별로 조사하고 에너지에 취약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

- 1)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2) [참고자료 1] 참고

로 예상됨

-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취약지역의 구체적인 유형과 규모 등을 구체화하기가 곤란하고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 취약지역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례가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에너지진단 등을 위해 ‘에너지진단 분석 및 현황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및 진단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³⁾

[표 2] ‘에너지진단 분석 및 현황파악’ 연구·용역 및 진단 분석의 비용 현황

(단위:백만원)

세부 내용	2023년	2024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효과측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진단 분석	100	245
에너지복지 현황 파악, 진단 분석 연구·용역, 데이터 분석·관리	400	185
합 계	500	430

주. 1. 에너지인력양성(R&D)(5802-301) 사업 예산으로 수행
2.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 안 제7조제2항제5호의2의 분산에너지⁴⁾ 활성화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력수요 발굴, 분산에너지 편익 창출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 설계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2023년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⁵⁾에 따라 산

- 3)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상황과 에너지 취약지역의 유형 및 규모가 다르므로 [표 2]의 연구·용역 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비용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추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4)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ESS, 수요자원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 인근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의미함
- 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업통상자원부에서는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관련 자료 및 기수행한 연구·용역 등이 부재하여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4.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5. 분산에너지 보급량에 관한 사항
 - 6.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7.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 8.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 촉진에 관한 사항
 - 9.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기술현황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 정책과 제도 정비에 필요한 현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지수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3750	zisu37@nabo.go.kr

[참고자료]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비용 현황⁶⁾

연번	지자체	예산(백만원)
1	서울	196
2	부산	98
3	대구	97
4	인천	99
5	광주	100
6	대전	97
7	울산	99
8	세종	100
9	경기	99
10	강원	100
11	충북	100
12	충남	91
13	전북	100
14	전남	100
15	경북	99
16	경남	99
17	제주	-
평 균		104

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제출자료, 2020~2024년에 수립한 현황임